

**[의결권 행사정책]**

당사는 '의결권행사 지침' 아래 이와 관련한 세부지침인 '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'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. 당사의 의결권 정책이 담긴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

**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**

**A. 지배구조**

주주총회의안	찬성	반대	사안별 검토	필수검토사항	
				찬성요소	반대요소
<b>1.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</b>					
1.1 소수주주권 보호	○			주식보유기간이나 비율을 완화하는 경우	
<b>1.2 주주총회</b>					
1)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증가		○		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	
2) 주주의 직접 참석없이 전적으로 전자수단에 의해서만 개최되는 주주총회 개최제한		○		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	
3)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권한 제한		○			
4) 주주의 서면투표 실시 허용 제안	○				
5) 주주의 전자투표 실시 허용 제안	○				
1.3 주주제안			○	동종업계 상장사와 재무구조 및 주주정책을 정량 비교할 때 주주이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경우	주주 다수가 승인한 주주의 제안을 시행하지 않는 이사의 연임
<b>1.4 안건의 공개</b>					
1)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안건의 총회상정		○			
2)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안건의 처리 허가를 구하는 제안		○			
<b>1.5 안건의 상정</b>					
1) 일괄상정을 금지하는 안	○				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훼손하는 안건을

					주주들에게 인기 있는 안건과 묶어 통과시키려는 하는 경우
2) 일괄 상정한 안			○	개별 안건 전부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	
1.6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의 변경					
1)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의 변경제안			○	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	
2)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제안		○			
1.7 의결주체의 변경					
			○		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제한하는 안
1.8 비밀투표					
	○			위임투표의 전 과정이 비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안	
1.9 회사명칭의 변경					
			○		인지도 하락이 예상되는 등 주주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
1.10 회계연도 변경					
			○	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	①잡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 ②정기주주총회를 연기할 목적으로 회계연도를 변경
1.11 의사정족수 변경					
			○		의사정족수나 의결권수를 변경하는 제안
1.12 의결권 대리행사					
1) 의결권 대리행사 자격			○	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	특정한 주주로 제한하는 경우
2) 과도한 대리권 증명서 면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		○			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,인감증명서, 참석장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경우
1.13 주주명부 폐쇄기간 변					
			○	폐쇄기간을 단축하는	폐쇄기간을 연장하

경				경우	는 경우
<b>2. 이사회</b>					
2.1 이사회추천위원회					
1)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이사회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제안	○				
2) 이사회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	○				
2.2 대표이사					
1) 대표이사의 선임			○	전문성, 경험과 평판, 윤리성, 겸임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	
2) 대표이사 3기 이상 연임 시 이사회 결의요건을 강화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전환하는 안	○				
3)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는 안	○				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승계 규정: 경영승계 담당조직의 구성.운영.권한. 책임.조직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.고위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.비상시 혹은 대표이사 은퇴 시 경영승계 절차, 임원 및 후보자 교육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경우
2.3 집행임원					
1) 집행임원제도 도입안	○				
2) 집행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	○				
2.4 이사의 선임					
1) 독립적인 이사회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의 선임	○				①본 가이드라인에 위배 ②회사나 이사들의 장기성과 불만족

<p>2) 이사의 선임</p>		<p>○</p>		<p>*일반적으로 반대투표하는 경우          ①법규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·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②이사가 전년도 주주 다수에 의해 채택된 제안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③이사회나 이사회회의의 주요위원회에 3/4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④특정주주 집단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⑤의도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왜곡하거나 감춘 증거가 있는 경우 ⑥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⑦그 밖에 회사 가치의 훼손,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</p>
<p>3)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</p>		<p>○</p>		<p>*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찬성투표 가능          ①책임한도의 기준이 되는 "최근 1년간 보수액"의 개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          -책임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        - 실제 책임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</p>

					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 - 상법 제400조 제 2항 단서규정을 최 소한으로 하여 책임 감면이 배제되는 경 우를 명확히 할 제 시할 것
4)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	○				
5) 경영자와 반대하는 측간 의 경쟁이 있는 경우			○	주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에게 찬 성	
6)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 예정 이사의 수보다 많은 경우 과반수의 득표를 받 은 후보 중 최다 득표한 후보 순으로 이사를 선임 하도록 하는 안	○				
7) 이사선임시 투표방법			○	이사후보 각자에 개 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	이사후보를 묶어 일 괄 투표하는 방식
8) 이사의 임기 구조를 변 경하는 안			○		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사회 책임의 지 하시키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 하려는 경우
9)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 실적 및 주요 공시대상 안 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공 시하도록 하는 안	○				
2.5 이사회 규모			○		①이사회 내 위원회 의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숫자를 제한하는 제안 ②개별 이사의 영향 력을 무력화할 정도 의 많은 이사를 두 려는 제안
2.6 이사회 내 위원회					
1)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	○			이사회 운영의 효율	합리적이고 정당한

치하는 안				성·독립성을 저해하는 특별한 우려가 없는 경우	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설치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
2) 상세한 위원회규정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안	○			*상세한 위원회 규정 : 구성원의 자격, 책임, 의사결정 절차, 자체평가 및 보고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경우	
3) 위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	○				
4) 기존의 사외이사 비율을 축소하는 안		○		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	
2.7. 내부거래위원회					
1) 명칭을 불문하고 내부거래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거래를 사전에 심사하고 승인하는 독립적인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	○				
2)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	○				
3)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주주총회 승인사항으로 하는 안	○				
2.8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					
1)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	○				
2)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	○				
2.9 사외이사					
1) 이사회 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	○			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중을 낮추는 경우도 포함	
2) 사외이사 선임			○	* 다음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대투표 ①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(비영리법인 포함)의 전직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	

				<p>②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그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</p> <p>③회사(현재 및 과거)의 외부감사회사, 그 계열법인의 피고용인 및 관계자로서 감사 또는 관계업무를 수행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</p> <p>④최근 3년 이내에 회사(최대주주, 계열회사 포함)와 중요한 거래관계,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(법률사무소 포함)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</p> <p>⑤신규임기를 포함하여 당해 회사에 사외이사로 연속 재임하는 연수가 7년(금융회사는 5년)을 초과하는 자(단, 재임연수에는 계열회사 재임기간을 합산하며,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)</p> <p>⑥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</p> <p>⑦그 밖에 법률자문,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</p>
3)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충족여부를 매년 확인 및 검토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건	○			
4) 사외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는 안		○		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
5)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		○		<p>*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찬성투표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책임한도의 기준이 되는 "최근 1년간 보수액"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</li> <li>- 책임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</li> <li>- 실제 책임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</li> <li>-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규정을 최소한으로 하여 책임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할 것</li> </ul>
2.10 임기 중 해임안		○		이사의 임기 중 이사에게 불법행위, 법령

				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수행에 부적임 사유가 있는 경우	
2.11 이사의 집중투표제	○			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건	
2.12 시차 임기제의 도입	○				
2.13 이사의 활동공개					
-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실적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안	○				
2.14 이사회 평가					
-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 및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안	○				
2.15. 이사 책임보험					
-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소신 있는 이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무책임한 경영판단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는 제안	○				
2.16.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(CEO)의 분리	○				
1) 고위 경영자(CEO,CFO)등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제안	○				
2)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직책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회의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(lead director)제도를 도입하	○				

는 제안					
<b>3. 감사 및 감사위원회</b>					
3.1. 감사위원회					
1)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회사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	○				상법 제409조 제2항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
2) 상근감사를 둔 회사가 상근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	○				
3.2.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			○		
1) 직무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륜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못한 후보		○			
2)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후보		○			* 결격사유 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 ①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중인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보수 중 기업 공개, 도산, 구조조정, 세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감사 용역 보수가 감사 용역보수를 넘는 경우 ③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중인 회사가 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을 받거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·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
3)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(결격)요건을 준용하는 안	○				
4)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구성과 기능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안	○				

5) 이사선임 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 른 이사를 분리하여 선 출하도록 하는 안	○				
3.3.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이 "적정"이 아닌 경우		○			
3.4. 외부감사비용의 공개	○				
3.5. 외부감사인의 감사					
-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 인으로부터 감사이외에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안	○				
<b>4. 임직원의 보상</b>					
4.1. 임원보수					
1) 그 수준이 회사 및 이사 회의 규모, 경영성과 등 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보수한도 안	○				
2) 보수가 5억 미만이더라 도 보수 수준이 가장 높 은 일정 수 이상의 이사 보수를 공개하거나, 보 수 공시기준을 5억원 미 만으로 낮추는 안	○				
3) 개별 임원보수 공시를 미등기 임원(최고재무임 원, 최대주주 및 특수관 계인 등)에게 확대하는 안	○				
4.2. 보상위원회의 구성					
1)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제안	○				
2) 보상위원회의 구성원을 전원 독립적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제안	○				
3)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보상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	○				
4) 임원에 대한 보상체계 등에 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	○			* 구체적인 내용 ①보상에 관한 총계 정보(고정 및 변동 보 상액의 구분) ②변동보상 금액 및 형태(현금,주식,주식연 계상품,기타 등)	

				③현금 및 주식보상의 배분기준 ④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⑤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기준 ⑥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⑦이연보상액(당해 회계연도 지급액) ⑧그 밖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 정 보상에 관한 정보	
4.3. 사외이사의 보상					
- 사외이사들에게 급여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 되, 퇴직 시까지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안	○				
4.4.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			○	경영자의 업적과 보 수를 연계시키는 제 안	성과에 연계되지 않 는 경영진 보상체계
4.5. 주식보상제도	○				
4.6. 주식매수선택권(스톡옵션)부여					
1) 임직원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스톡옵션을 부여 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 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주주제 안	○				
2)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성과와 연계하여 설정하 되, 시장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는 제안	○				
3) 주주가치 희석의 정도가 10% 이상이거나 스톡옵 션의 규모가 총 발생주 식의 2%를 초과			○		
4) 사후에 스톡옵션 행사가 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행 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 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제안			○	증자 및 소각 등 주 식가치의 변동 시 기 존 스톡옵션의 실질 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 우	미래 시점에 재조 정, 재발행 가능성 을 소지한 스톡옵션 플랜
5) 스톡옵션의 행사유보기 간을 단축하는 제안			○		
6) 특정한 성과목표 달성 조건으로 권리행사가 가 능한 스톡옵션플랜	○				

4.7. 자사주 구매를 위한 회사의 대부		○			
4.8. 보상제도					
1) 급여체계에 성과목표를 추가하는 제안	○				
2) 동종업계 성과, 시장상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성과연동형 보상	○				
3) 장기성과 연동형 주식 보상 부여	○				* 다음의 상황을 만족하는 경우 찬성 ①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과목표의 제시 ②매도제한 기간의 적절한 설정 ③합리적인 부여방법 및 지급기준의 제시 ④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보상규모의 적절한 설정
4) 주식과 연계한 보상의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	○				
5) 성과연동보상 중 60%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이연 지급하는 안	○				
6) 성과연동형 보상이 분식회계, 허위공시, 주가조작 등으로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	○				
7) 사외이사에게 성과급, 퇴직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가와 연계된 보상을 부여하는 안		○			
4.9. 우리사주제도	○				
4.10. 종업원 주식매입제도			○		*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찬성 ①매수가격이 공정시장가격의 최소 85%

				이상 ②제공기간이 24개월 미만 ③동 제도로 인한 의결권 희석이 10% 미만
4.11. 퇴직보상				
1) 과도한 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급 지급 안		○		* 과도한지 여부 : 과거 경영실적, 회사의 재무상황, 퇴직사유 등을 고려
2) 최고경영자 혹은 사내이사 아닌 사외이사의 경우 퇴직 혜택을 부여하는 제안		○		
4.12.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주주제안				
1) 임직원 보수와 기업구조조정간의 관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주주의 제안			○	
2) 임직원의 보수와 기업의 사회적 성과의 관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제안		○		
5. 기업구조조정				
5.1.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기업구조조정			○	장기적으로 주주가치 향상에 부합하는 구조조정 제안 재무적, 사회적, 환경적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인수합병, 구조조정제안
5.2. 자산의 매수 및 매각			○	*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- 자산매수 제안 : 매수가격, 공정성, 재무 및 전략적 혜택, 사업상 시너지, 이해상충 등을 고려 - 자산매각 제안 : 대차대조표에 대한 영향, 재무 및 영업상의 기대효과, 자금의 예상 사용처, 거래의 공정성, 이해상충 등을 고려
5.3. 증권의 전환			○	*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- 기존 주주들에 대한 희석화, 전환가격, 재무적 이슈, 경영권 이슈, 이해상충 등을 고려
5.4. 채무재조정 - 채무재조정안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우선주를 증가시키거나 발행하			○	*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-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, 제안의 조건, 재무상황, 경영권상의 고려사항, 이해상충

는 제안				문제 등을 고려
5.5.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안			○	*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- 설립목적,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, 자본구조 변화 및 재무상황,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
5.6. 조인트 벤처			○	*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- 제공하려는 자산의 비중, 소유지분의 비중, 재무 및 전략적 혜택, 이해상충 등을 고려
5.7. 청산			○	*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- 청산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회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
5.8. 회사분할			○	*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- 분할방식, 가치평가, 공정성, 이해상충, 경영자의 인센티브, 기업지배구조의 변화, 자본구조상의 변화 등을 고려
5.9. 부채조달에 의한 기업인수(Leveraged Buyout)			○	* 재무상황, 세금 및 규제상의 혜택, 가치평가, 공정성, 이해상충, 대안 등을 고려
<b>6. 기업인수, 위임장 대결, 인수 방어</b>				
6.1 기업인수 및 인수방어				
1) 인수합병 자체 혹은 이를 위한 법정자본금의 증가나 신주발행			○	*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찬성 - 결합된 회사의 전망, 재무 및 영업상의 이점 - 합병대금의 적정성 - 시장반응 - 협상절차의 적정성 -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- 자본구조의 변화 - 이해상충
2) 다른 기업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 시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사회와 경영자들의 대항능력을 강화시키는 제안	○			
6.2. 위임장 대결				

<p>1) 위임장 대결 시 현직 경영자 또는 그에 대한 도전자를 지지할지에 관한 판단</p>			<p>○</p>	<p>* 다음의 사항을 고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쟁자와 비교한 경영실적</li> <li>-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취한 조치</li> <li>- 주주제안에 대한 기업의 반응</li> <li>- 현 경영자와 도전자간의 기업개선이나 기업지배 전략상의 차이</li> <li>- 도전자에 대한 찬성투표가 이사회 의 독립성과 다양성에 미칠 영향</li> <li>- 이사 후보의 경험과 능력</li> <li>- 현 경영자의 경영고착화(entrenchment) 정도</li> <li>- 기업의 인수방어전략의 적정성</li> </ul>	
<p>2) 위임장 대결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제안</p>			<p>○</p>		
<p>6.3.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 (Going Private Transactions)을 위한 거래</p>			<p>○</p>	<p>주주들에게 적절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</p>	<p>거래가 다수의 인수가 참여하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들에게 최선의 가격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</p>
<p>6.4. 왕관보석 방어전략 (Crown Jewel Defences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의 핵심적 사업부분을 매각해 인수 매력을 떨어뜨리는 전략</li> </ul>		<p>○</p>		<p>주주들에게 적절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</p>	
<p>6.5. 그린메일(Greenmail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수대상기업이 인수를 시도하는 주주로부터 그 주주가 이미 인수한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프리미엄을 의미</li> </ul>		<p>○</p>			
<p>6.6. 황금낙하산(Golden Parachutes)</p>		<p>○</p>		<p>* 예외적인 찬성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)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고</li> <li>ii)수혜자의 이해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며</li> <li>iii)제시된 액수가 기업의 다른 종사원들</li> </ul>	

				과 비교해 적정한 경우	
6.7. 초다수의결(Super-Majority Vote)		○			
6.8. 본사이전			○	주주들에게 이로운 경우	기업인수 제안을 봉쇄하려는 경우
<b>B. 자본구조</b>					
주주총회의안	찬성	반대	사안별 검토	필수 검토사항	
				찬성요소	반대요소
<b>자본구조</b>					
<b>1. 보통주의 액면가 조정</b>					
- 보통주의 액면가를 감액하려는 경영자의 제안	○				
<b>2. 법정자본금의 증가</b>			○	-증가시키지 않으면 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거나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-임직원의 주식인수권의 행사에 대비한 목적인 경우	외부의 기업인수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할 경우
1)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		○		자본금의 증가 등 목적이 명백한 경우	
2) 법정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안			○	주식분할이 목적인 경우	이미 많은 법정발행주식수를 가지고 있으나 발행하지 않았거나, 현재의 법정발행주식수보다 100% 이상 많게 법정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
<b>3. 자본금 감소</b>		○		*예외적인 찬성 사유 - 기업의 회생, 자본조달,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-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-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의 경우	
<b>4. 신주발행 및 자사주 매각</b>					
1)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신주의 발행이나 자사주의	○				

매각은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주주제안					
2)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인 경우		○			
<b>5. 자기주식</b>					
1) 자기주식 취득안			○	회사의 이익규모, 재무상황, 과거 취득의 적정성,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	
2) 모든 주주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개시장에서의 자기주식 매입을 제도화하려는 제안	○				
3) 자기주식 매입제안			○		i)과거에 회사가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거나 ii)차별적 자기주식 매입을 방지할 대책이 없는 경우 iii)새로운 사업투자가 필요해서 실행하는 경우
4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의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안	○				
5)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제한			○	주주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경영권 방어에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등의 소지를 없앨 목적인 경우	
6) 자기주식의 처분을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도록 하는 안	○				
7)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해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안		○		우리사주조합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	
<b>6. 신주인수권</b>					
1)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안		○		그 근거, 목적, 범위, 기준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	

				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	
2)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		○		발행목적, 발행규모 및 가격, 발행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,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	
7. 종류주식			○	자금조달원의 다양화를 기하고 악의적인 적대적 M&A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우	주주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M&A를 부당하게 방어하기 위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
8. 실권주를 최대주주, 특수관계인, 임직원, 사외이사 등에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	○				
9. 우선주의 발행			○	우선주의 의결권, 배당금, 전환권 및 주식의 다른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며, 그것이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	
10. 사모, 워런트, 전환무보증채권의 발행			○	목적이 합리적이고 주주들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경우	기업인수의 방어목적
11. 자본구조의 개편			○	*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- 자본구조의 단순화 여부 - 유동성의 증가여부 - 전환조건의 공정성 여부 - 의결권 및 배당에 대한 영향 - 자본구조개편의 사유 - 이해상충 여부 - 기타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	
12. 주식병합			○	-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- 상장폐지를 피할 목적인 경우	
13. 주식분할 및 주식배당	○				발행가능한 주식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우

<b>14. 배당정책</b>				- 적정 배당정책에 의한 배당 - 중간,분기배당을 허용하는 안	-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
1) 회사의 적정 배당정책에 의한 배당	○				
2) 중간 또는 분기배당을 허용하는 안	○				
3)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			○	현물의 시장성,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	
4)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결정하게 하는 안			○	주주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당을 회사 성과와 적절히 연계하는 등 배당원칙과 기준,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	
<b>15. 사채</b>					
1) 다음의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안 -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-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-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-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			○	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, 전환가격 및 신주인수가액, 재무 상황, 경영권 관련 사항,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	
2) 특정주주 및 제3자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안			○	발행목적, 발행규모 등이 적정하고,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지 않으며, 시장반응도 부정적이지 않은 경우	

3)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3자배정을 통한 주식연계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안	○				
4)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정관에 정하고자 하는 제안	○				
5) 주주들의 우선인수권이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채권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50%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경우		○			
6) 주주들의 우선인수권이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채권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20%이상 증가될 수 있다면 그러한 채권의 발행에 대한 안		○			
7)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규모가 크지 않고,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는 경우	○				
8) 담보의 제공			○		
9) 차입한도의 확대			○		